



# 품질보증 계약서

포괄적 • 투명함 • 공정함

Moll bauökologische Produkte GmbH, Rheintalstraße 35-43, 68723 Schwetzingen, Germany

버전: 2019 년 3 월

## 1. 이 품질보증 계약서의 주제

이로서 Moll bauökologische Produkte GmbH(이하 "Moll"이라고 칭함)는 Moll 이 공급한 표준 pro clima 제품(이하 '제품' 또는 '~품'이라고 칭함)에 관한 이 품질보증 계약서의 조항에 의거해, 4 절에 따른 품질보증 기간 동안 2 절에 따른 구상권을 가진 당사자를 위해 제한적인 제조사 품질보증을 제공한다.

## 2.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

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란 Moll 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한 고객과 이 고객에게서 제품을 구매한 최종 고객으로서, 이 최종 고객은 Moll 의 직접적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(이하 "청구자"라고 칭함).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할 것으로는 구매 영수증 또는 서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송장(인보이스)만으로 (이하 "청구권에 대한 증명서"라고 칭함) 충분하다.

## 3. 품질보증 사유

이 품질보증 계약서의 의미에서의 품질보증 사유는 구매 시점에 유효하였던 Moll 의 사양을 기준으로 제품 특성에 차이가 있음이 4 절에 따른 품질보증 기간 내에 명확해지는 경우 및 이러한 차이가 특히 제품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, 운전이나 유지보수 또는 설치 지침의 위반 또는 제품에 가한 외부 영향에 기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발생한다. Moll 은 이 범위를 초과한 어떤 품질보증의 제공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.

## 4. 품질보증 기간

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Moll 이 첫 번째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에서 시작되며 이 시점으로부터 육(6) 년 후 종료된다. 품질보증 기간은 해당 제품(들)이 오직 표준 pro clima 제품과의 조합으로만 설치되었을 경우, 관련 용도를 위한 제품이 pro clima 시스템의 일부로서 공급되는 한, Moll 이 첫 번째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으로부터 십(10) 년 후로 연장된다.

## 5. 품질보증 사유의 통지

3 절에 따른 품질보증 사유가 4 절에 따른 품질보증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, 청구자는 이를 4 절에 따른 품질보증 기간 내에, 하지만 늦어도 청구자가 품질보증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십사(14) 일 이내에 서면으로 Moll 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, 청구자는 이 통지에 청구권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.

## 6. 품질보증 청구

청구자가 4 절에 따른 품질보증 기간 내에 3 절에 따른 품질보증 사유를 5 절에 따라 Moll 에게 적절히 통지한 경우, Moll 은 자체 재량에 의해 대체품을 청구자에게 결함품이 사용되는 장소로 Moll 의 비용 부담 하에 공급하거나 제품의 결함을 바로잡는다. 제품이 이미 설치된 경우, Moll 은 자체 재량에 의해 문서에 기록된 합리적인 설치 및 제거 비용을 부담하거나 제삼자에게 의뢰해 설치 및 제거를 수행한다. 이러한 방식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청구자는 구속력이 있는 비용 산정액을 청구자의 자비로 Moll 에게 제출해야 하며, Moll 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또는 제삼자에게 설치 및 제거 작업의 수행을 의뢰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Moll 로부터 받아야 한다. 위에서 기술한 청구자의 품질보증 청구는 최종적이며 MOLL 은 더 이상의 품질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## 7. 제척 기간

6 절에 따른 품질보증 청구권은 제기된 이러한 구상권 주장의 통지로부터 일(1) 년 이내에 만료된다.

## 8. 법적 권리 주장

청구자가 판매자로서의 Moll 이나 Moll 의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어떤 법적 청구도 이 품질보증 계약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.

## 9. 최종 조항

두 당사자는 슈베칭겐(Schwetzingen)이 전속적인 법적 관할 구역임에 동의한다. 그러나 Moll 에게도 청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판 관할 구역에서 청구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. 이 품질보증 계약서는 오직 독일 법률에만 따르며, 국제물품매매계약(CISG)에 대한 유엔협약은 예외로 한다. 이 거래 약관의 개별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거나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, 남은 규정의 법적 유효성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. 이 경우, 이 계약의 각 당사자는 유효하지 않은 조항을 그것이 의도한 경제적 목적에 최대한 근접하게 상응하는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교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실행할 의무를 진다. 이 규정은 이 품질보증 계약서에 허점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